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26 - 40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33호(2006.4.20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3일

양 천 구 청 장

1.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m^2)			최초 결정일	실효일
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폐지	주차장	신정동 319-21,22	1,513.2	감) 1,513.2	-	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33호 (2006. 4. 20.)	2026. 4. 21.

2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 (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)

3. 지형도면 : 붙임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〈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실효 지형도면〉

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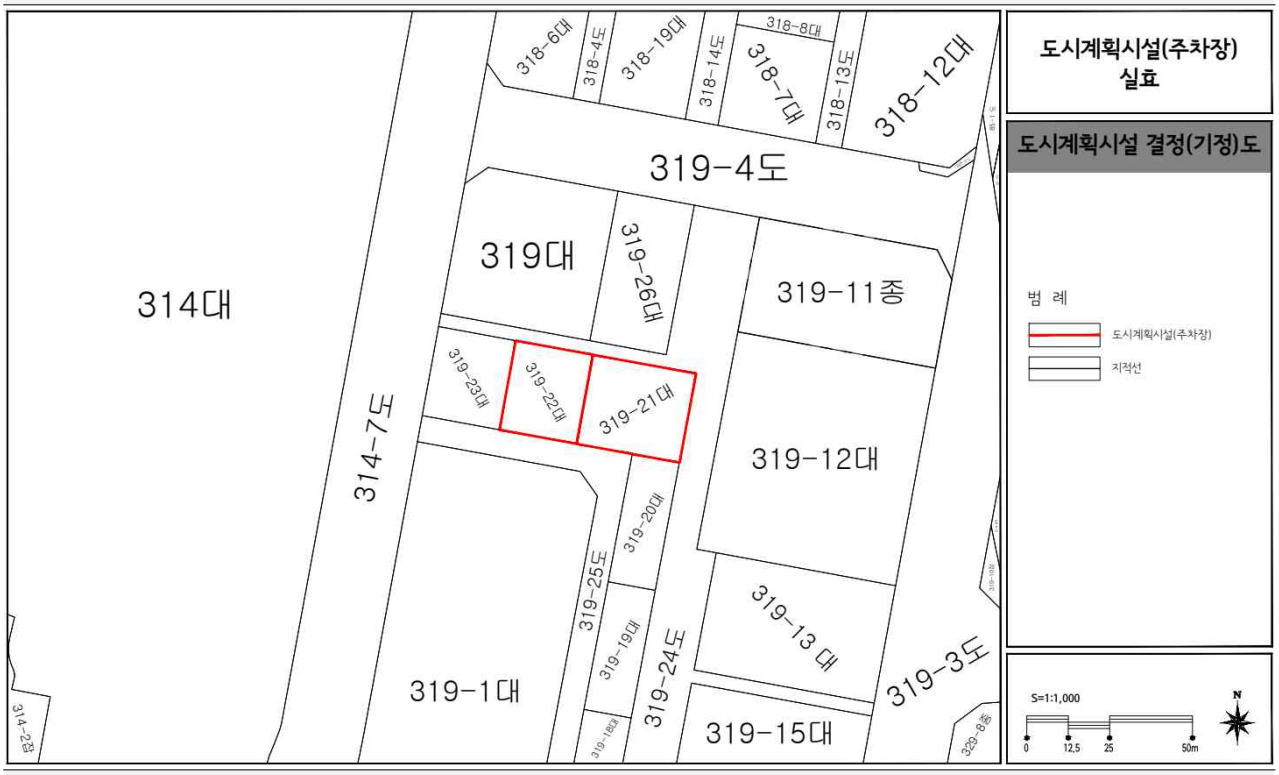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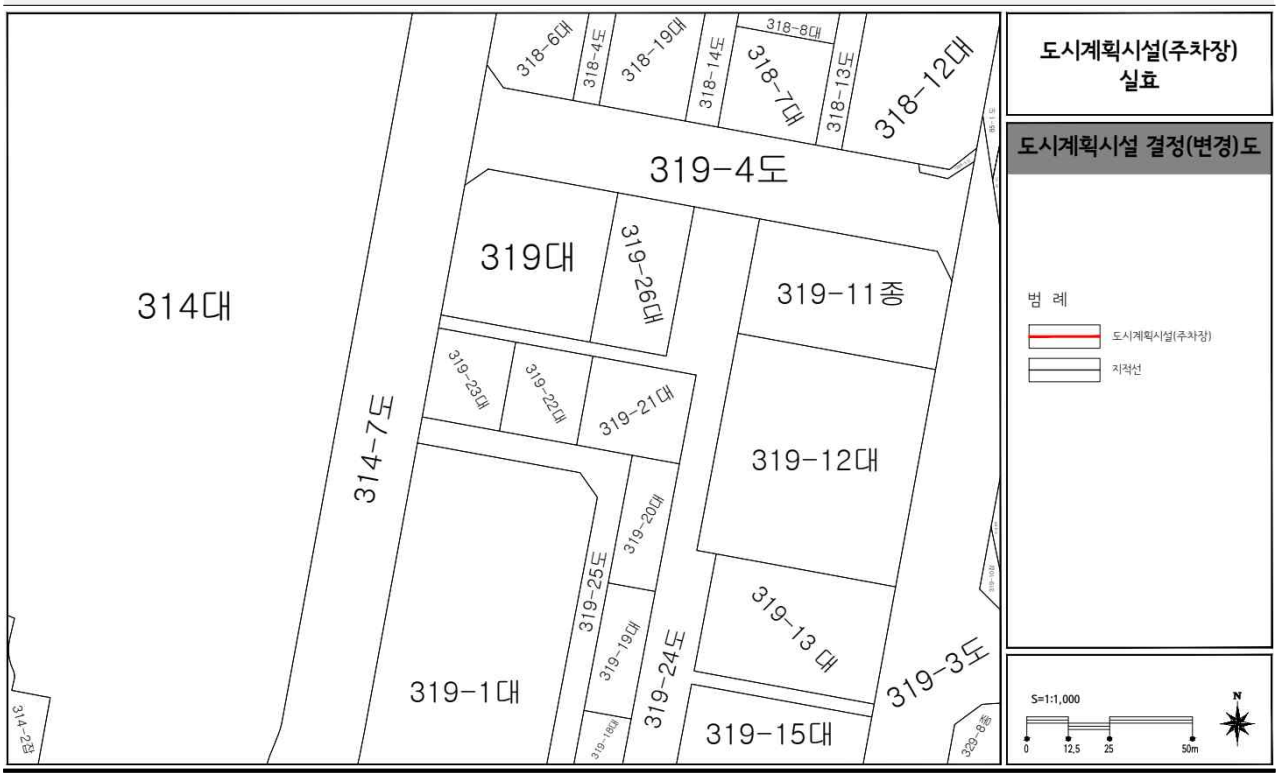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